

자유선택의 미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권과 부모권 선택의 선호와 실제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 승
(동의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 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자유선택, 부모권, 노동권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 2010-330-B00133).

■ 투고일: 2012.10.31 ■ 수정일: 2012.12.14 ■ 게재확정일: 2012.12.23

I. 문제 제기

탈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적 고용구조의 해체와 돌봄의 위기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재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신사회적 위험과 함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아동보육의 문제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했으며, 정치권의 선심성 무상보육의 추진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육정책의 두 축으로서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¹⁾과 양육수당 제공²⁾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예산의 상당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태생적 문제와 함께 정책 대상의 특성과 사업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계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김종해, 2007; 백선희, 2008). 즉, 보육료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한 개별 가정의 과도한 시설보육 이용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양육방식 선택이 왜곡되고, 시설보육이 필요한 2인 생계부양자 가구는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양육에 있어 ‘자유선택’의 문제는 가족정책관련 논의의 중요한 의제로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사실상 개인/개별 가구의 ‘자유선택’ 또는 ‘선택의 자유’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서로 간에 중복되거나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선택은 개인/개별 가구의 아동양육 방식의 선택(직접보육 vs. 친인척 보육 vs. 시설보육 vs. 보모보육 등)을 비롯해 직장(노동)과 가정(양육)의 선택(노동권 vs. 부모권), 아동양육 기관의 선택(국공립 보육시설 vs. 민간보육시설 등) 및 선택주체의 문

-
- 1) 2012년 현재 현행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제도는 만 0~2세와 만 3세는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다만 연령에 따라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등으로 지원액이 다를 뿐이다. 한편, 만 3~4세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 2) 현행 양육수당제도는 만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으로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지만, 이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제외하면 지원금이 아동의 연령 구분 없이 10만 원으로 고정된다.
 - 3) 우리나라의 2011년 0~2세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54%인데, OECD 국가 가운데 만 2세 이하 영아 시설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덴마크(83%)와 스웨덴(66%) 두 곳뿐이며, 이들 국가의 영아의 어머니 취업률은 각각 72%, 76.5%인 반면, 우리나라는 29.9%에 불과하다.

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류연규,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유선택 논의의 초점은 아동양육 방식의 선택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정책대안들이 생성되어져 왔다. 하지만 자유선택의 문제가 상품화, 탈상품화, 가족화, 탈가족화 등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여성의 노동권의 문제가 쟁점사항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보육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자유선택의 논의는 아동양육형태 이전에 개인의 직장(노동권)과 가정(부모권)의 선택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혹자는 보육정책의 방향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양육방식의 선택논의가 노동권과 부모권의 선택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보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맞벌이 가정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보육에 의존하는 가구의 부모가 노동시장에 반드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보육정책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수혜대상이 시설에 아동을 맡기지 않고 있는 가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담보하기도 어렵다(예를 들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친인척에게 양육을 맡기고 본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양육방식의 선택에 근거한 정책지원은 정책의 취지와 목표(예를 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책이 의도한 수혜대상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정책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국가가 지향하는 보육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동권과 부모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택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유선택을 허구라고 비판하는 논리 중의 하나는 자유선택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유선택이 개인에게 있어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 사회적인 상황 및 개인이 처한 조건 등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조건과 제약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remer, 2002; Morgan, 2002).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개인의 실질적인 선택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희망하거나 선호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의 선택이 다르다면, 오히려 개인이 희망하는 선택이야말로 자유선택 반대자들이 지지할 수(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선택의 개념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동권과 부모권 중 개인이 희망(선호)하는 권리가 무엇이며, 그러한 선택과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 및 그러한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실제로 개인이 결정한 선택의 결정요인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보여 주고 있는 노동권과 부모권 간의 선택 이면에 내재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욕구충족과 정책의 목표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보육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등 미시적 차원의 변인들이 부모권과 노동권 중 개인이 선호하는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II장에서는 자유선택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분석자료, 변수의 특성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IV장은 분석결과로서 이상과 실제의 선택을 구분하여 선택한 권리에 따른 주요 특성들을 설명하며,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V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어 낸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개인이 원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사전적 의미의 자유선택의 개념은 그 당위성에 있어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기본권이기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공평하게 수용하고 충족시켜야 하며, 그것을 위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대안들을 수립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각자 선호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속성과 함께 정책을 통해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행동패턴을 수정하고 인도한다는 또 다른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책대안은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요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으며,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국민의 선호 또는 요구와 반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공급자인 국가에 의

해 좌우될 수도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유선택의 논의에는 국가의 정책이데올로기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이념적 논쟁이 수반된다(이진숙, 2010). 본 고에서는 기존의 자유선택 논의의 초점이 되어 온 아동양육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모권과 노동권의 선택에 초점을 맞춰 자유선택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쟁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우선, 자유선택 옹호론자들은 그 선택의 대상이 무엇이든 개인 또는 개별 가구가 가지고 있는 선호와 욕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이들 모든 구성원의 개별화된 선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수립하여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개별 가정의 부 또는 모(또는 부모 모두)가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할 권리(노동권)를 선택하기 원한다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국가는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여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할 권리(부모권)를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그러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사실 아이를 돌보는 권리인 부모권과 노동을 할 권리인 노동권의 두 권리를 두고 개인 또는 개별 가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는 총 네 가지이다. 즉, 노동권을 포기하고 부모권을 선택하는 경우, 그 반대로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권과 노동권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와 반대로 두 권리 모두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유선택 옹호론자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선택한 개인 또는 가정에게는 시설보육과 같은 서비스를, 노동권을 포기하고 부모권을 선택한 개인을 위해서는 양육수당과 같은 제도를, 노동권과 부모권을 모두 선택한 개인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 등이 각각의 선택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마련될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권과 부모권 모두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경우에는 권리이자 의무를 모두 저버린 도덕적 해이에 몰든 개인을 위해 국가가 정책지원을 할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다(물론 이런 경우에도 유기 또는 방임된 아동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자유선택의 반대론자들은 모든 부모가 처한 현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내린 어떠한 결정이 그 상황과 조건 하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선호하는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개인 또는 개별 가구가 실제로 선호하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유’선택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권을 포기해야 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어 부모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결정한 선택은 자유선택이 아니라 제한된 선택이며, 강제된 선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Hiilamo, 2004; Hiilamo & Kangas, 2003; Leira, 2002; 송다영, 2009 재인용).

특히 이들은 자본주의 구조에서 자유는 노동을 통하거나 혹은 노동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온전한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담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다(송다영, 2009). 따라서 자유선택 옹호론자들에게 있어 자유의 개념이 개인이나 개별 가족이 노동권과 부모권 중 원하는 권리를 자유롭게 선택(두 권리 모두 선택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들 반대론자들에게는 개인이나 개별 가족이 노동권을 선택하거나 노동권과 부모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유선택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통한 남녀간 평등을 실현하고 개별 가정의 조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더욱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Hiilamo & Kangas, 2003), 국가가 상이한 성별분업구조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해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정의나 평등의 관점에서 오히려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한다(이진숙, 2010; 윤승희, 2008; 유해미, 2004).

따라서 자유선택 옹호론자의 입장에서는 노동권을 선택한 개인에게 자녀를 대신 돌보아 주는 보육서비스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권을 택한 개인에게도 양육수당 등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선택 반대론자들은 양육수당이나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이 여성의 재가족화를 부추겨 노동권을 상실하게 만들며, 더욱이 아동보육의 질도 개별 가족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있어 가정 간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Morel, 2007; Jenson & Sineau, 2003). 실제로 가족내 성별분업구조라는 보수적인 이념을 지향하는 독일의 경우, 일 아니면 가족 중 자유로운 선택(Wingen, 1997; Gerlach, 1996; 이진숙, 2010 재인용)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일-가정양립보다

는 현금급여 중심의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은 파트타임 노동자나 취업중단-재취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양육수당을 제공한 프랑스에서는 저소득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시켜 여성의 재가족화를 복돋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Jenson & Sineau, 2003). 따라서 자유선택은 많은 경우, 보수적 이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되어진다(이진숙, 2010).

특히, 자유선택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전근대적 가부장적 규범이 여전히 견고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의 선호가 비록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존중하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유선택은 조건 없는 선택의 자유가 아닌 가족 내 부모의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나 자녀의 욕구 등을 기준으로 정책수혜의 자격 여부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 머물러야 함을 강조한다(최은영, 2010).

이와 같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둘러싼 자유선택의 논의는 접점을 찾을 수 없으리만큼 치열하다. 따라서 자유선택의 논의의 출발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동권과 부모권 중 어떠한 권리를 선택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선택의 편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것을 토대로 단계적 정책대안의 수립이 마련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원자료는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연구의제로 선정된 ‘표준고용관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의 창출’을 위한 2차년도 기초자료로서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집되었다. 원자료는 2011년 11월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에 의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2012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원자료의 사례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127명을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남성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남성도 노동권만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권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남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정내 성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 127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하는 권리와 실제 선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제시한 독립변인 중 성별고정관념 변인을 제외시키고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성별고정관념이 하나의 일정한 방향(예를 들어, 성별고정관념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성별에 따라 정반대의 권리를 추구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남성의 경우, 성별고정관념이 강하다는 의미는 노동권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추구하지만, 여성이 성별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은 부모권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남녀를 모두 혼합하여 대상으로 한 분석은 자유선택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고정관념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 127명 중 여성으로만 분석 대상을 국한시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또 한 번 실행하여 그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2. 변수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종속변수로는 노동권과 부모권 중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희망하는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등 2개의 변수이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생계부양형태, 근로시간 등 고용관련 특성 변인, 개인 근로소득, 가구 총 소득, 자가 소유 여부, 가구자산 총액 등 경제적 특성 변인, 성역할고정관념 변인 및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변인 등 총 5집단 12개의 변인으로 구성한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 중 성별은 여성을 준거집단(0)으로, 남성을 '1'로 가변

수화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 이하 집단은 준거집단으로 하여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을 '1'로 가변수화 하였다. 연령과 자녀 수는 연속변수이다. 두 번째로 고용관련 특성 변인 중 근로시간은 연속변수이며, 생계부양형태는 1인 생계부양 가구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2인 생계부양가구 집단은 '1'로 가변수화 하였다. 세 번째로 경제적 특성변인 가운데 근로소득, 가구 총소득, 가구 자산총액은 연속변수이며, 자가 소유여부 변인은 비자가를 준거집단으로 자가를 '1'로 가변수화 하였다.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은 총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측정결과 Cronbach's α는 0.7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변인의 경우, 접근성, 비용, 서비스 질, 보육교사 대비 아동 수 등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OECD, 2006; 윤홍식, 2010 재인용),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비용과 서비스의 질의 두 항목만을 활용하였다.

표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변수		변수 설명(속성)	
종속 변수	희망하는 권리	부모권(직접양육), 노동권(직장생활)	
	실제 선택한 권리	부모권(직접양육), 노동권(직장생활)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재학 이상
		자녀 수	연속변수
	고용관련 특성	생계부양형태	1인 생계가구, 2인 생계가구
		근로시간	연속변수
	경제적 특성	개인 근로소득	연속변수
		가구 총 소득	연속변수
		자가 소유 여부	자가 소유, 자가 미 소유
		가구 자산총액	연속변수
	성역할 고정관념		리커트 5점 척도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리커트 5점 척도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모권과 노동권 중 개인이 희망하는 권리와 현재 실제로 선택한 권리의 차이를 비교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희망하는 권리유형과 실제 선택한 권리유형의 빈도와 평균,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성역할 고정관념, 서비스 이용 적절성 인식 등 독립변수들의 빈도와 평균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유형과 실제 선택한 권리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등 여러 독립변수 별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다만,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성역할고정관념 변인의 경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3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했기에 연속변수로 인식됨에 따라 교차분석이 불가능하여 성역할고정관념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셋째, 희망하는 권리유형과 현재 선택한 권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게 되면 성역할 고정관념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문제가 생기기에, 전체샘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변인을 제외한 후 분석하고,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번 더 실시하여 성역할 고정관념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분석 대상자 특성

가. 선호(희망)하는 권리

우선, 종속변수의 하나인 부모권과 노동권 중 선택을 희망하는 권리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인 부모권을 선택하기 원하는 비율은 50.8%(64명)이며, 노동시장에서 근로할 권리인 노동권을 원하는 비율은 49.2%(62명)로 거의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2. 부모권과 노동권 중 희망하는 권리

구분		N	%
선호하는 권리	부모권	64	50.8
	노동권	62	49.2
	합계	118	100.0

나. 실제 선택한 권리

실제로 선택한 권리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권을 선택한 비율은 36.2%(46명)이며, 노동권을 선택한 비율은 63.8%(81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희망하는 권리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50.8% → 36.2%)하고, 노동권을 선택(49.2% → 63.8%)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상품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며, 우리사회가 2인 생계부양가족 유형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 부모권과 노동권 중 실제 선택한 권리

구분		N	%
실제 선택한 권리	부모권	46	36.2
	노동권	81	63.8
	합계	127	100.0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47.2%(60명), 여성은 52.8%(67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5세 이하가 25.2%(32명), 36세 이상이 74.8%(95명)였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0.4%(64명), 대학재학 이상이 49.6%(63명)였으며, 6세 이하 자녀 수는 1명이 20.2%(22명), 2명이 59.6%(65명), 3명 이상이 20.2%(22명)로 나타났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60	47.2
	여	67	52.8
	합계	127	100.0
연령 (M=46.74, SD=14.211)	35세 이하	32	25.2
	36세 이상	95	74.8
	합계	127	100.0
학력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64	50.4
	대학재학 이상	63	49.6
	합계	127	100.0
자녀 수	1명	22	20.2
	2명	65	59.6
	3명 이상	22	20.2
	합계	109	100.0

라. 고용관련 및 경제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고용관련 및 경제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고용관련 특성 중 생계부양형태의 경우, 1인 생계부양 유형이 52.5%(62명), 2인 생계부양 유형이 47.5%(56명)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은 0시간이 16.5%(21명), 1~40시간이 31.5%(40명), 41시간 이상이 52.0%(66명)로 평균 근로시간은 약 42시간 (SD=21.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용관련 및 경제적 특성

	구분	N	%
생계부양형태	1인 생계부양	62	52.5
	2인 생계부양	56	47.5
	합계	118	100.0
근로시간 (M=42.18, SD=21.919)	0시간	21	16.5
	1~40시간	40	31.5
	41시간 이상	66	52.0
	합계	127	100.0
본인 근로소득 (M=166.25, SD=144.439)	0원	21	16.7
	1~100만 원	32	25.4
	101~200만 원	41	32.5
	201만 원 이상	32	25.4
	합계	126	100.0
가구 총소득 (M=389.40, SD=210.415)	250만 원 이하	35	28.2
	251~500만 원	62	50.0
	501만 원 이상	27	21.8
	합계	124	100.0
자가 소유여부	자가	93	73.2
	비 자가	34	26.8
	합계	127	100.0
자산 총액 (M=,26.590.24 SD=48,391.837)	10,000만 원 이하	46	36.2
	10,001~20,000만 원	32	25.2
	20,001만 원 이상	49	38.6
	합계	127	100.0

한편, 경제적 특성의 경우, 본인 근로소득은 소득 없음 16.7%(21명), 1~100만 원 25.4%(32명), 101~200만 원 32.5%(41명), 201만 원 이상 25.4%(32명)를 차지했으며, 평균 본인 근로소득은 약 166만 원(SD=144.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총소득은 250만 원 이하가 28.2%(35명), 251~500만 원 50.0%(62명), 501만 원 이상 21.8%(27명)를 차지하였고, 평균 가구 총소득은 약 389만 원(SD=210.415)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여부의 경우는 자가인 경우 73.2%(93명), 비 자가인 경우 26.8%(34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자산 총액의 경우, 10,000만 원 이하가 36.2%(46명), 10,001~20,000만 원 25.2%(32명), 20,001만 원 이상 38.6%(49명)이며, 평균 자산 총액은 26,590만 원(SD=48,391.837)이었다.

마.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대상자의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대상자들은 ‘여성은 가족을 위해 유급노동(직장)의 시간이나 기간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54.3%(69명)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 15.8%(20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평균은 3.40(SD=0.857)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가 부

표 6. 성역할 고정관념

구분	N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M(SD)	
성역할 고정관념 (M=3.35, SD=0.739)	여성은 가족을 위해 유급노동의 시간이나 기간을 줄여야 한다	127	3 (2.4)	17 (13.4)	38 (29.9)	64 (50.4)	5 (3.9)	3.40 (0.857)
	일자리 부족 시, 남성은 여성보다 일자리를 가질 더 큰 권리가 있다	127	6 (4.7)	17 (13.4)	41 (32.3)	50 (39.4)	13 (10.2)	3.37 (0.998)
	여성이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보다는 가사와 육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127	3 (2.4)	24 (18.9)	39 (30.7)	56 (44.1)	5 (3.9)	3.28 (0.899)

족할 경우, 남성은 여성보다 일자리를 가질 더 큰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49.6%(63명)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8.1%(23명)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평균은 3.37(SD=0.998)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성보다는 가사와 육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문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48.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1.3%(6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평균은 3.28(SD=0.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평균은 3.35(0.739)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분석대상자의 보육서비스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비용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59.0%(72명)로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는 응답 비율 18.9%(23명)보다 세 배 이상 많아, 보육서비스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평균은 3.56(SD=1.091)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8.8%(58명)였으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6.0%(19명)에 불과하였다. 평균은 3.43(SD=0.935)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의 평균은 3.50(0.879)으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구분		N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⁴⁾ (M=2.93, SD=0.726)	아동 보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	122	5 (4.1)	18 (14.8)	27 (22.1)	48 (39.3)	24 (19.7)	3.56 (1.091)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질에 만족한다	119	2 (1.7)	17 (14.3)	42 (35.3)	44 (37.0)	14 (11.8)	3.43 (0.935)

4) ‘아동 보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를 역코딩하여 mean 함수를 통해 평균을 산출하였다.

2. 희망하는 권리와 실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 분석

가.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

분석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카이스케어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 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의 76.3%(45명)는 노동권을, 여성의 74.6%(50명)는 부모권을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고정관념의 정도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60.3%(38명)가 부모권을 희망하는 반면, 대학재학 이상의 58.7%(37명)가 노동권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저학력자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비록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노동시장으로부터 탈퇴하여 부모권을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질의 만족도에 따라 만족하지 않는 경우, 69.6%(16명)가 부모권을 선택하길 희망하는 반면, 보통으로 만족하는 경우에는 76.9%가 노동권을 선택하기 원하고, 보육서비스 질에 만족하는 사례들 중 52.8%가 오히려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보육서비스의 질에 만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숫자가 부모권을 선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늦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갖게 된 계층) 이유로 인해 연령이 낮거나 평균 출산연령대에 자녀를 갖게 된 계층에 비해 어린 아동에 대한 애착이 더 클 것이며, 그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더라도 부모권을 선택하길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향후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

구분			희망하는 권리		합계	x ²
			부모권	노동권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성	14 (23.7)	45 (76.3)	59	32.518***
		여성	50 (74.6)	17 (25.4)	67	
	연령	35세 이하	13 (40.6)	19 (59.4)	32	1.775
		36세 이상	51 (54.3)	43 (45.7)	9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 (60.3)	25 (39.7)	63	4.573*	
	대학재학 이상	26 (41.3)	37 (58.7)	63		
자녀 수	1명	9 (40.9)	13 (59.1)	22	3.312	
	2명	34 (53.1)	30 (46.9)	64		
	3명 이상	15 (68.2)	7 (31.8)	22		
고용 관련 특성	생계부양 형태	1인 생계부양	30 (49.2)	31 (50.8)	61	0.079
		2인 생계부양	29 (51.8)	27 (48.2)	56	
	근로 시간	0시간	13 (61.9)	8 (38.1)	21	4.122
1~40시간		19 (47.5)	21 (52.5)	40		
41시간 이상		32 (49.2)	33 (50.8)	65		
경제적 특성	본인 근로소득	0원	14 (66.7)	7 (33.3)	21	18.637
		1~100만 원	22 (68.8)	10 (31.3)	32	
		101~200만 원	22 (53.7)	19 (46.3)	41	
		201만 원 이상	6 (19.4)	25 (80.6)	31	
	가구 총소득	250만 원 이하	24 (68.6)	11 (31.4)	35	6.124
		251~500만 원	26 (42.6)	35 (57.4)	61	
		501만 원 이상	13 (48.1)	14 (51.9)	27	
	자가 여부	비 자가	17 (50.0)	17 (50.0)	34	0.012
자가		47 (51.1)	45 (48.9)	92		
자산 총액	10,000만 원 이하	25 (54.3)	21 (45.7)	46	0.900	
	10,001~20,000만 원	14 (43.8)	18 (56.3)	32		
	20,001만 원 이상	25 (52.1)	23 (47.9)	48		
보육 서비스 적절성 인식	보육비용 부담이 크다	그렇지 않다	8 (42.1)	11 (57.9)	19	2.157
		보통이다	18 (42.9)	24 (57.1)	42	
		그렇다	32 (56.1)	25 (43.9)	57	
	서비스 질에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	16 (69.6)	7 (30.4)	23	11.275**
		보통이다	6 (23.1)	20 (76.9)	26	
		그렇다	38 (52.8)	34 (47.2)	72	

*p<0.05, **p<0.01, ***p<0.001

나.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

분석 대상자들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분석 대상자들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 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근로시간과 본인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0시간, 즉 비취업자인 경우, 당연히 100% 부모권을 선택하고 있으며, 1~40시간의 경우, 83.7%가 노동권을 선택하고 있고, 41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00% 노동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40시간 근로하고 있는 사람 중 83.7%가 노동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결과는 나머지 16.3%의 사람들은 비록 일하고 있지만 파트타임 등 짧은 시간만을 일하고 있어 본인들이 부모권을 선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데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본인 근로소득에 따른 선택권을 살펴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 100% 부모권을 선택하고 있으며, 1~100만 원의 경우, 78.1%(25명)가 노동권을, 101~200만 원도 73.2%(30명)가 노동권을, 201만 원 이상도 78.1%(25명)가 노동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9.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특성 차이

구분			실제 선택한 권리		합계	χ^2
			부모권	노동권		
	성별	남성	19 (31.7)	41 (68.3)	60	1.021
		여성	27 (40.3)	40 (59.7)	67	
	연령	35세 이하	10 (31.3)	22 (68.8)	32	0.457
		36세 이상	36 (37.9)	59 (62.1)	95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 (43.8)	36 (56.3)	64	3.166
		대학재학 이상	18 (28.6)	45 (71.4)	63	
	자녀 수	1명	6 (27.3)	16 (72.7)	22	2.454
		2명	24 (36.9)	41 (63.1)	65	
		3명 이상	11 (50.0)	11 (50.0)	22	

표 9. 계속

구분			실제 선택한 권리		합계	x ²
			부모권	노동권		
고용 관련 특성	생계부양 형태	1인 생계부양	21 (33.9)	41 (66.1)	62	0.384
		2인 생계부양	16 (28.6)	40 (71.4)	56	
	근로 시간	0시간	21 (100.0)	0 (0.0)	21	39.651***
		1~40시간	25 (62.5)	15 (37.5)	40	
		41시간 이상	0(0)	66 (100)	66	
	경제적 특성	본인 근로소득	0원	21 (100.0)	0 (0.0)	21
1~100만 원			7 (21.9)	25 (78.1)	32	
101~200만 원			11 (26.8)	30 (73.2)	41	
201만 원 이상			7 (21.9)	25 (78.1)	32	
가구 총소득		250만 원 이하	16 (45.7)	19 (54.3)	35	3.673
		251~500만 원	23 (37.1)	39 (62.9)	62	
		501만 원 이상	6 (22.2)	21 (77.8)	27	
자가 여부		비 자가	10 (29.4)	24 (70.6)	34	0.932
		자가	36 (38.7)	57 (61.3)	93	
자산 총액		10,000만 원 이하	14 (30.4)	32 (69.6)	46	2.606
		10,001~20,000만 원	10 (31.3)	22 (68.8)	32	
		20,001만 원 이상	22 (44.9)	27 (55.1)	49	
보육 서비스 적절성 인식	이동 보육 부담이 크다	그렇지 않다	6 (26.1)	17 (73.9)	23	1.307
		보통이다	9 (33.3)	18 (66.7)	27	
		그렇다	28 (38.9)	44 (61.1)	72	
	아이의 돌봄 서비스에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	9 (47.4)	10 (52.6)	19	2.065
		보통이다	12 (28.6)	30 (71.4)	42	
		그렇다	21 (36.2)	37 (63.8)	58	

*p<0.05, **p<0.01, ***p<0.001

3.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본 절에서는 샘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본 분석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 중 성역할고정관념 변인을 제외하고 실시한 분석결과이다.

부모권과 노동권 중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의 왼쪽 부분과 같다. Chi-square가 54.55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모형 전체 변량 중 투입된 변수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는 56.9%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 되었다. 즉, 남성일수록 노동권을 희망하는 경향이 30.116배, 자녀 수가 적을수록 노동권을 희망하는 경향이 1.6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사회는 여전히 가정 내 성별분업의식이 견고하며, 여성의 노동권 선택에 있어 자녀양육이 상당한 장애이며, 우리사회가 그러한 장애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해 준다.

반면, <표 10>의 오른쪽 부분은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Chi-square가 19.806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모형 전체 변량 중 투입된 변수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는 25.1%로 나타났다.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특성 변수인 가구자산 총액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 되었다. 즉, 가구 자산총액이 증가할수록 부모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1.00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정도가 커질수록, 노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아마도 여성의 경우), 노동 시장에서 탈퇴하여 아동의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전체 샘플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⁵⁾

구분		희망하는 권리 (부모권: 0, 노동권: 1)		실제 선택한 권리 (부모권: 0, 노동권: 1)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3.405***	30.116	0.679	1.972
	연령	0.041	1.042	0.027	1.028
	학력	0.436	1.546	0.748	2.114
	자녀 수	-0.957*	0.384	-0.627	0.534
고용 관련 특성	생계부양형태	-0.059	0.942	0.314	1.369
	근로시간	-0.013	0.987	0.006	1.006
경제적 특성	본인근로 소득	0.000	1.000	0.000	1.000
	가구 총 소득	0.005*	1.005	0.001	1.001
	자가 여부	-0.557	0.573	-0.228	0.796
	가구자산 총액	0.000	1.000	-0.001**	0.999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0.824	0.439	0.379	1.460
X ²		54.552***		19.806*	
-2LL		81.305		107.565	
Nagelkerke R ²		0.569		0.251	

*p<0.05, **p<0.01, ***p<0.001

4.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여성 샘플을 대상으로

본 절에서는 여성 샘플만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본 분석에서는 특별히 성역할고정관념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5) 성별: 남성=1·여성=0, 학력: 대학재학 이상=1·고등학교졸업 이하=0, 생계부양형태: 2인=1·1인=0, 자가 여부: 자가=1·비 자가=0

부모권과 노동권 중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의 왼쪽 부분과 같다. Chi-square가 20.05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모형 전체 변량 중 투입된 변수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는 50.7%로 나타났다.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 수 변인만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 되었다. 즉, 자녀 수가 적을수록 노동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1.9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

반면, <표 11>의 오른쪽 부분은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Chi-square가 20.346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모형 전체 변량 중 투입된 변수의 설명변량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는 45.2%로 나타났다. 실제 선

표 11. 여성 샘플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⁶⁾

구분		희망하는 권리 (부모권: 0, 노동권: 1)		실제 선택한 권리 (부모권: 0, 노동권: 1)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	0.094	1.098	0.023	1.023
	학력	-0.815	0.443	0.289	1.335
	자녀 수	-2.412*	0.090	-0.271	.763
고용 관련 특성	생계부양형태	3.565	35.323	1.180	3.256
	근로시간	-0.063	0.939	-0.003	.997
경제적 특성	본인근로 소득	0.005	1.005	0.004	1.004
	가구 총 소득	0.002	1.002	-0.002	.998
	자가 여부	-0.575	0.562	-0.507	.602
	가구자산 총액	0.000	1.000	-0.001*	0.999
성역할 고정관념		1.734	5.665	-1.578*	.206
보육서비스 적절성 인식		-0.589	0.555	0.369	1.446
X ²		20.050*		20.346*	
-2LL		32.641		46.955	
Nagelkerke R ²		0.507		0.452	

* $p<0.05$

6) 학력: 대학재학 이상=1·고등학교졸업 이하=0, 생계부양형태: 2인=1·1인=0, 자가 여부: 자가=1·비자가=0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특성 변수인 가구자산 총액 변수와 성역할 고정관념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가구 자산총액이 증가할수록 부모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1.001배 증가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할수록 노동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1.79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여성들이(남성 포함) 노동권과 부모권을 놓고 선택함에 있어 여전히 전근대적 가부장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요인, 특히 소득보다는 가구의 자산에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V.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인 부모권과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권리인 노동권에 있어 이들이 희망하는 권리와 실제로 선택하는 권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어졌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기에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경우처럼 정규성이나 잔차의 독립성 등의 전제(가정)를 하지 않아 사례 수의 규정에 크게 저촉되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은 사례 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좀 더 견고한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사례분석을 위한 N값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따라 분석사례의 연령통제를 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의 경우, 201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5-34세의 출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산 평균 연령이 31.4세임에 비해,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46.74세에 달하고, 36세 이상이 74.8%를 차지하고 있어 표본이 대표성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더욱이 본 연구의 목적이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선택의 차이를 탐색하고 각 선택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희망하는 권리와 반대되는 선택을 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해당하는 사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희망하는 권리와 실제 선택한 권리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부모권과 노동권 가운데 희망하는 권리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물론 비슷한 비율의 남녀를 함께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결과도출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 선택을 희망했던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고 노동권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더 중요한 함의는 자유선택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권리가 자유선택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권리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권리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유선택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정반대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선택은 노동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그들이 희망하는 선택은 오히려 부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비록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노동권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척박하여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는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절반 축소,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해결,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외에는 모두가 구호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의 수에만 집착하였을 뿐(양적인 수 또한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여성 일자리의 경우에는 경력단절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청소 용역과 같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유선택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권 획득 자체만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진정한 시민권과 사회권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얼마만큼 안정되고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는 양질의 노동권을 획득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숫자놀음에 치우친 일자리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고안해 내어야 할 것이다.

둘째,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 결과에 있어, 우선 희망하는 선택의 결정요인은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이며, 자녀 수가 적을수록 노동권을 희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남성은 생계부양을 책임지며,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책임진다는 가정 내 성별분업인식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해 준다. 특히, 자녀 수 변인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권 선택에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은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이며, 우리사회가 그러한 장애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큼 보육친화적인 환경을 갖추지 못한다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위기나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특성 변수인 가구자산 총액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구 자산총액이 증가할수록 부모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자산 총액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진다면, 굳이 노동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여 자녀양육에 전념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보육서비스 이용 적절성과 같은 정책적 조건보다는 가구자산 총액, 가구총소득과 같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선택을 제한받는다라는 분석 결과는 사실상 자유선택 이론의 반대자들의 주장, 즉 행위자의 선호나 행태가 개인이나 가구가 처한 개별적 상황(경제적 상황)이나 제도적 조건(보육서비스 이용적절성)에 의해 실제 선호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일정 부분 지지해 주는 결과임과 동시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마도 보육서비스 이용적절성과 같은 정책적 조건이 실제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수혜자들이 선호하는 공보육시설의 수는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상황에서는 이동을 둔 부모의 선택이 서비스 이용적절성에 의해 영향 받을 소지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하는 선택과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성별 변인이 제외되고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이 투입된 분석결과는 희망하는 선택에 자녀 수 변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보여준다. 반면,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자산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 여성들이 부모권과 노동권 간의 실제 선택에 있어, 성역

할 고정관념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성별에 따른 권리 선호의 차이가 여전히 매우 견고함을 보여 준다. 또한 다른 어떠한 경제적 변인보다도 가족의 경제적 요인, 특히 자산요인에 의해 실제 선택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국가-시장-가족 간의 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정해진 규칙은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가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만의 고유한 보육모델을 창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위하여 정책을 구성원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결국 국가 또는 정책입안자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적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만)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동안 아동을 제대로 돌봐 줄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의 충분한 제공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보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패키지 구성 과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을 제1 고려요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노동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정책결정자들은 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화를 포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부모의 양육휴가제도, 선택적 시간제, 탄력적 시간제 등)의 활성화와 함께 이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 및 사회적 풍토를 확립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pp.209-233.
- 김중해(2007).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101(3). 나눔의 집.
- 류연규(2010). 돌봄의 자유선택과 계층화 토론문.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백선희(2008).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보육 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 토론회 자료집. KYC/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
- 송다영(2009).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pp.83-117.
- 유해미(2004). 젠더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시기의 양육정책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학과, 고려대학교, 서울.
- 윤승희(2008). 남부유럽의 가족정책 - 부모휴가와 아동양육시설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4(3). pp.27-47.
- 이진숙(2010). 복지레짐별 일 - 가족양립정책과 선택의 자유에 대한 논의. 201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은영(2010). 돌봄의 자유선택과 계층화 토론문. 제1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가족정책 포럼 자료집.
- Gerlach, I.(1996). *Familie und staatliches Handeln. Ideologie und Politische Praxis in Deutschland*. Opladen.
- Hiilamo, H.(2004). Changing Family Policy in Sweden and Finland during the 1990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1), pp.21-40.
- Hiilamo, H., Kangas, O.(2003).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Political frames in the making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Finland and Sweden. *Paper for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 - The Role for Social Policy*. pp.13-15. Nov. Copenhagen.
- Jenson, J., Sineau, M.(2003). France: Reconciling republican equality with freedom of choice. Jenson, J., Sineau, M.(eds). *Who cares? Women's*

- Work, Child Care, and Welfare State Redesign*. pp.88-117.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 Kremer, M.(2002).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Michel, S., Mahon, R.(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London: Routledge.
- Leira, A.(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el, M.(2007).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 and elder 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 pp.618-637.
- Morgan, L.(2002). *Does anyone have a “libre choix”?*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Michel, S., Mahon, R.(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London: Routledge.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윤흥식, 2006에서 재인용.
- Wingen, M.(1997). *Familienpolitik*. Grundlagen und aktuelle Probleme. Bonn.

권승은 미국 Ohio State Univ.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Columbia Univ.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정책이다.
(E-mail: ks1120@deu.ac.kr)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Preferred and Actual Choice

Kwon, Seung

(Donggeu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Keywords: Free Choice,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Parenthood